

# 검토보고서

2024. 2. 27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- 공덕동 행복주택 <sup>내</sup> -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 
[전문위원 장홍용]

- 공덕동 행복주택<sup>內</sup> -  
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(안)  
**검 토 보 고**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(장애인사회보장과)
- 제출일 : 2024. 2. 16.
- 회부일 : 2024. 2. 20. (의안번호 : 24-9)

## 2. 제출이유
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고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조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덕동 행복주택<sup>內</sup> 지역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,
- 지역 내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지역맞춤·주민체감형 통합 복지시설 공덕 실뿌리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「공덕동 행복주택<sup>內</sup> 공덕 실뿌리복지센터」 운영사무

##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1) 추진근거
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7조(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### 2)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·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 도모하고자 함

## 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1) 공덕 실뿌리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일체
- 2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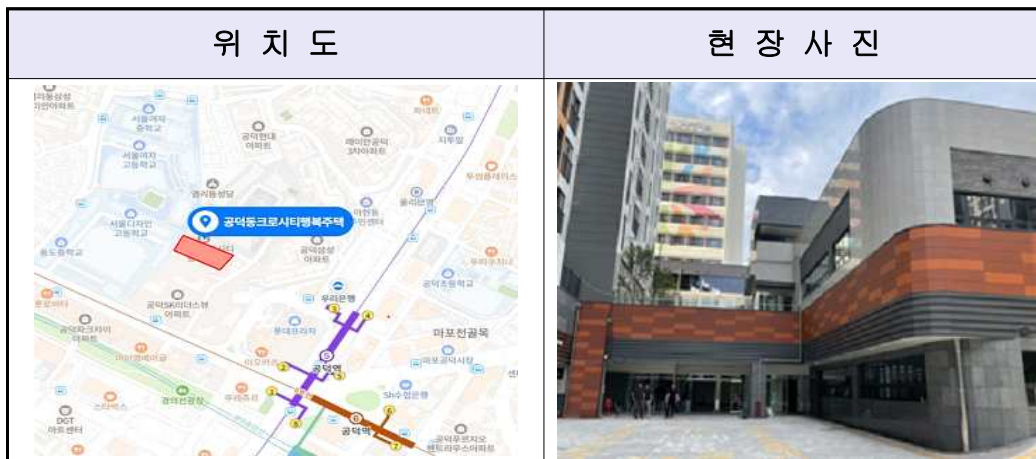
- 1) 위 치: 마포구 공덕동 370-4(공덕행복주택 丙 지역편의시설)

2) 시설규모: 연면적 1,274.66㎡(지상1층, 지하1층)

3) 층별현황

구 분	면적(㎡)	용 도	주 관 부 서
지 하 1 층	359.25	장애인 문화예술프로그램	장애인사회보장과
지 하 1 층	214.01	효도밥상 및 노인복지프로그램	어 르 신 동 행 과
지 하 1 층	337.57	생활체육 프로그램	체 육 진 흥 과
지 상 1 층	211.41	자율형 학습공간	가족행복지원과
지 상 1 층	152.42	장애인주간보호	장 애 인 사 회 보 장 과
<b>합 계</b>	<b>1,274.66</b>		

4)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4. 3. ~ 2027. 3.(3년) 예정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소요예산 : 418,713천원

2) 산출근거

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	418,713		
공덕 실뿌리 복지센터	민간 위탁금	126,074	- 인건비 50,126천원 - 관리비 37,176천원 - 일반운영비 26,296천원 - 자산취득비 2,400천원 - 수선유지교체비 등 10,076천원	구비 100%
체력 단련실 (피트니스센터)	민간 위탁금	140,433	- 인건비 88,933천원 - 일반운영비 51,500천원	구비 100%
자율 학습실 (공덕스페이스)	민간 위탁금	152,206	- 인건비 125,226천원 - 일반운영비 26,980천원	구비 100%

### 아. 민간위탁 추진일정(안)

- 1) 2024. 3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
- 2) 2024. 3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- 3) 2024. 4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4) 2024. 4월 : 위탁 운영 개시

### 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 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 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
- 2)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,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 4. 검토의견

### 1) 제안경위

- 본 동의안은 2024. 2. 16.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. 2. 20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고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조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덕동 행복주택內 지역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,
- 지역 내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지역맞춤·주민체감형 통합 복지시설 공덕 실뿌리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) 적정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·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,
-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,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본 위탁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 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,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“아이에서 어른까지” 쉼 연령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신설기관인 만큼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장애인 사회보장과	신희선 (8880)	강은영 (8881)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7조(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)

공공주택의 구조·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·복리시설의 범위,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4.>

####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

- ①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13.>

##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, 2023.12.28.>



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#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